2021년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ㅇ 일　　시: 2021. 8. 3.(화), 14:00 ~ 16:00

ㅇ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ㅇ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17명

- 심의위원: 박성호 위원장, 강태욱 위원, 권헌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연희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송수현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이성엽 위원, 임형주 위원, 최승수 위원

ㅇ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위원장

2. 전차(제2021-6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의위원

3. 안건상정 ····· 위원장

〈보고안건〉

・제1호: 2021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의결안건〉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3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4. 폐회선언 ····· 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보고안건

ㅇ 2021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주요내용
  · 2021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보고

2. 의결안건

ㅇ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안건번호 제2021-93740호는 제2021-150회 제4분과위원회(2021. 6. 17. 개최)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를 통하여 영상저작물 캐릭터의 색칠공부용 선화 도안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임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21-93740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도안 복제・전송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 규모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여 부결함

ㅇ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해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68개 계정에 대해 16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함

- 회의결과
  ·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 안건 중 중복 청구(모바일 웹하드)된 14개 온라인서비스의 61개 계정은 부결하고 그 외 16개 온라인서비스의 68개 계정은 복제·전송자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하였으므로 복제·전송자의 상습성, 복제·전송한 양, 게시한 불법복제물의 종료 및 시장대체 가능성, 저작물등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 시정권고를 가결함

ㅇ 제3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는 부의된 심의안건을 직접적인 회의출석 절차 없이도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나 의결정족수 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회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ㅇ 박성호 위원장: 코로나19 상황이 엄혹해서 대면 및 비대면을 절충하여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6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성호 위원장: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7쪽의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8쪽의 게시판명, 업체명, 특정 검색어, 10쪽의 업체명, 게시판명, 게시물 제목, 11쪽의 게시판명, 업체명, 위원명, 14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15쪽의 저작물명, 18쪽의 저작물명, 실연자명, 19쪽의 위원명, 21쪽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카페명, 게시판명, 게시물 본문 내용, 23쪽의 게시판명 등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였음.

- 참석 위원 전원: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불법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계정정지 안건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

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시물 제목, 저작물명, 게시판명, 업체명, 특정 검색어, 위원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카페명, 게시물 본문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계정정지 시정권고 회의 부분인 24쪽~2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보고안건

o 2021년 상반기 심의 현황 및 주요 심의 사항

- 이숙형 사무처장이 2021년 상반기 심의 현황을, 오진해 전문위원이 주요 심의 사항을 보고함.

4.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 목록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을 제시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제척 사유 해당 사항이 없음.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1-93740호는 제2021-150회 제4분과위원회가 전체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 블로그를 통하여 영상저작물 캐릭터의 색칠공부용 선화 도안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공하고 있는 도안의 출처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고자 함.

  첫 번째로, 원저작물인 '○○○○'의 일부 장면 또는 캐릭터를 외국 사이트 2개의 운영자가 색칠 가능한 흑백 선화 도안, 즉 색칠공부로 가공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함. 각 사이트가 저작재산권자인 ◎◎◎◎ 등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두 번째로, 국내의 ☆☆☆☆ 블로그임. 이하 '원글'이라고 지칭하겠음. 원글 작성자는 2014. 3. 8. 위 2개 사이트에서 '○○○○'의 도안 6건, ◎◎◎◎의 다른 애니메이션인 '□□□□'의 도안 1건, 총 7건을 내려받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그 도안과 함께 위 2개 사이트의 주소 및 유아복 쇼핑몰 1건의 주소를 직접링크로 제공하였음.

  마지막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위 '원글'을 2014. 3. 16. ☆☆☆☆가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여 스크랩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블로그는 심의대상 게시물 외에 다른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저작재산권자는 전세계를 통틀어 대표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IP사

업자이며, 국내의 여러 출판사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색칠공부, 스티커북, 퍼즐 등의 완구용 도서를 출판해오고 있음. 다만 2021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순 선화 도안만으로 이루어진 도서는 발간이 적어진 것으로 보임.

우선 심의대상 게시물의 원저작물은 영상저작물로 특정되어 심의에 상정되었으나, 제4분과위원회에서 영상저작물 자체가 아닌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원저작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음. 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캐릭터는 만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설, 각본 등에 등장하는 가공인물이나 동물의 용모, 자태, 성격이나 이름, 명칭 또는 소리 그밖에 일반 공중에 의해 쉽게 인식되는 본질적인 개성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처음부터 미술저작물 등으로 창작된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가 아닌 영상저작물 등의 등장인물로서의 캐릭터의 경우, 해당 캐릭터를 원저작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음. 우리 법원은 영상저작물 내의 시각적 캐릭터를 무단복제하여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캐릭터상품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온 바 있으며, 일반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독립적인 상품화 여부, 고객흡인력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음.

즉 가공인물의 창작적인 외형 표현을 이용한 '색칠공부 도안'을 복제·전송한 본 건의 경우, 영상저작물 자체보다는 영상저작물에 의하여 표현된 캐릭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본 건에는 도안 작성자 및 원글 작성자,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간략하게 저작권 침해

여부, 공정이용과 같은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해당성 및 시정권고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또한 원글과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해외사이트의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한 가능함.

우선 도안 작성자의 경우, 원저작물인 캐릭터를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전송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됨. 2021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상당량의 색칠공부 도안을 제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됨.

두 번째, 원글은 위 각 사이트의 직접링크를 게시하였고, 7장의 도안을 내려받아 직접 복제·전송하였음. 캐릭터 자체를 원저작물로 보는 경우, 게시된 도안의 수와 관계없이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원글 작성자는 자녀의 색칠공부에 해당 도안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저작물의 복제·전송 자체를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원글 본문에서 아동복 쇼핑몰 주소를 게시하여 작성 당시 간접적인 영리적 목적 또한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원저작물을 이용한 정식 색칠공부 책 등 도서완구가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해당 색칠공부 도안의 합법시장이 존재하며, 원글이 게시한 도안이 합법시장에서의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 블로그가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여 원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저장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는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 저장차원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스크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원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재게시한 것이므로, 게시물 내부 도안 복제물

등에 대한 판단은 원글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음.

즉 외국 사이트 및 원글의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며,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단순히 개인 이용에 그칠 목적으로 타인의 글을 저장한 것으로, 다른 요소에 대한 판단은 원글과 동일해야 할 것이나 이용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판단은 원글에 비하여 유리할 수 있음.

한편 심의위원회는 공정이용 단계에서 판단하는 시장대체성과 별도로,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한번 고려하고 있음. 즉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보호원으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권리자의 위임이나 요청 없이도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부결하거나,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도안 복제·전송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 규모의 이용이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박성호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번호 제2021-93740호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민원인과 권리자와의 관계가 확인이 되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민원인은 익명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음.

- B 위원: 원글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원글의 현재 상태를 제시하면서)여전히 복제·전송 중인 상태임.

- A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시정권고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경고의 시정권고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저는 저작권법 시정권고 제도의 보충적인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관점임. 권리자와 이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이 고루 위촉되었다는 것은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임. 경고의 시정권고도 권리자 권익 보호에 치중되어서 운영된다는 느낌을 줄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임.
  본 건의 경우는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도 무방한 사안이 아닌가 사료됨.
  법 133조의3의 취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임. 권리자가 충분히 스스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시정권고 제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권리 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 C 위원: 저는 B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바임. 킬러 컨텐츠가 인터넷 상에서 신속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입법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부결 의견임.
  게다가 본 건은 공정이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이 되었다면 시장 대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연 그러한 건인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분과위원회의 심의시에는 원저작물이 영화임을 전제로 검토하여 공정이용을 사유로 부결의견으로 보고하였음. 하지만 제4분과위원회에서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저작물의 이용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음. 캐릭터저작물 자체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 다시 검토하였음. 캐릭터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본다면 공정이용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음.

- A 위원: 우리가 만약 이 문제를 권리자에게 안내를 했는데 권리자가 소송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시 우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지만, 권리자가 직접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요청을 하는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덧붙여 말하면 현재 심의대상 게시물은 타인의 게시물을 그대로 스크랩한 것인데, 권리자라면 직접 원글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원글에는 광고 부탁 등 상업적 목적이 개재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원글이 심의요청되었더라면 경고의 시정권고 의견으로 검토하였을 수 있음.

- A 위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일관적인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인데, 누가 문제제기하였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D 위원: 저는 본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함. 권리자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안내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음.
기존 심의와의 일관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심의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이용이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이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더 편안한 조치가 아닐지 생각됨.

- B 위원: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1기, 2기 심의위원회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1기 때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로 부결하였고, 경고의 시정권고는 거의 하지 않았음. 경고의 시정권고는 최근 들어서 예외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현재는 권리침해 정도가 적으나, 장차 심각하게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일 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경고보다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임.

- E 위원: 제1분과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에 부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경고의 시정권고도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시정권고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면 부결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임.

- A 위원: 제2분과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확실할 경우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를 할 만큼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등의 요건을 부가적으로 판단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 B 위원: 킬러 컨텐츠의 복제·전송을 계속해오던 사람이 심의일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을 했을 때, 향후 똑같은 복제·전송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을 때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본 사안처럼 위원님들간에 공정이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없다는 논의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관련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 F 위원: 제4분과위원회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한 경우도 B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신 취지와 같음.

- G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한 번 스크랩해 온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다시 스크랩해 갈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맞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원글은 여러 사람이 스크랩해 갈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현재 상태를 제시하면서)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하단에서 “스크랩된 글은 재스크랩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음.

- G 위원: 저는 모든 저작권 침해 사안을 시정권고 제도에 집어넣어 경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더군다나 이 게시물 자체는 남들이 퍼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본인만 이용할 수 있음. 그렇다면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함.

- A 위원: 저는 당초 다른 의견을 드렸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충분히 논의는 된 것 같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성호 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H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단순 저장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블로그 자체는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이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이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 중단한다고 해도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해칠 사정이 있지 않은 단순 침해 사안으로 보임. 현재는 시간이 약간 흘렀으나 ◎◎◎◎의 ‘○○○○’은 개봉 당시 킬러 컨텐츠였다는 점, 컬러링북이라는 시장이 존재하고 시장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심의에서 가결하고 있는 다른 사안들과 다른 점

이 없다는 측면에서 가결 의견임.

- 박성호 위원장: 경고가 아닌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됨.

- H 위원: 그러함.

- B 위원: H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저작권법 시정권고 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권리 구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킬러 컨텐츠에 대해 선제적으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임. 그러한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본 사안이 그에 걸맞는지 의문이 있음.

- 박성호 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음. 해당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표결함)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9374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부결: A 위원,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G 위원, I 위원, J 위원, K 위원, L 위원, M 위원, N 위원, O 위원 / 경고가결: F 위원, P 위원, Q 위원 / 가결: H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9374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 정지 시정권고 심의

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6쪽부터 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계정정지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중복 청구된 64개 계정은 부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 · 전송자의 92개 계정에 대해 18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개월의 계정정지를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o 제3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박성호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회는 부의된 심의안건을 심의위원의 직접적인 회의출석 절차 없이도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제9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다만 의결정족수 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기준이 명시되도록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함. 동 규정 하단에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함.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는 대면 심의의 예외로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박성호 위원장: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A 위원: 대면 심의 의결정족수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함.

- A 위원: 자칫 모르고 보면 서면이나 전자적 의사 결정에 대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 같아 드리는 질문임.
법적 효력 요건이 동일하다면 요건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 오진해 전문위원: 서면 또는 전자 의결의 경우 전체 위원님이 출석한 것으로 전제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B 위원: 제9조 제2항에는 의결정족수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구문을 추가한 것으로 이해됨.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I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동안은 전체 위원님들께 의결서를 받아 만장일치 형식으로 의결해왔음.

- B 위원: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대면 심의를 개최해왔고, 제9조 제1항에는 대면심의시의 의결정족수가 이미 명시되어 있음.
  서면 심의는 분과위원회 구성 안건 또는 올해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졌음. 당시에는 의결정족수 규정이 누락되었어도 불편함이 없었는데, 코로나 환경이 확산되며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관련 규정 누락을 뒤늦게 인식하고 이번 개정에 포함시킨 것임.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 박성호 위원장: 만장일치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함"

5. 폐회 선언

o 박성호 위원장이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203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2.

위원장 박성호

위원 강태욱

위원 권헌영

위원 김경숙

위원 김민아

위원 김연희

위원 노정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송수현

위원 신창환

위원 심장섭

위원 오영주

위원 위정현

위원 이성엽

위원 임형주

위원 최승수